

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
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 청년에게 관내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임
- 나.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다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- 2) 필요성 :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, 인재매칭, 사업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 :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 전반

1) 세부 사업계획 수립

2) 기업발굴, 청년-기업 매칭,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

3) 기업 프렌드십 운영,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연계 등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4 ~ 2027. 2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40백만원(시비) 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340	68	238	34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3. 부서의견

-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 기준 인건비 총사업비의 20% 이
내로 산정

나.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일정 수준의 규모(기업-청년
매칭)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액 편성

※ 사업비 : 2025년 최초 편성예산 400백만원 기준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 인건비	68	80	80	80	80	388
	○ 간접비	34	40	40	40	40	194
	○ 사업비	238	280	280	280	280	1,358
	계	340	400	400	400	400	1,94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-	-	-	-	-	-
도비		-	-	-	-	-	-
시비		340	400	400	400	400	1,940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340	400	400	400	400	1,940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이세호(☎480-610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340,000	
인 건 비	68,000	·참여인력(석사급 이상) 4명 × 10개월 × 30% 이내 참여율 *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 기준 인건비 총사업비의 20% 이내
직 접 비	238,000	·인턴지원비 : 1,078천원 × 3개월 내외 × 40명 = 129,360천원 * 2026년 최저임금(월) 2,156,880원의 50%, 천원 미만 절사 정액 ·멘토 지원비 : 100천원 × 4개월 × 80명 = 32,000천원 * 사내멘토/교내멘토 담당 인턴 1명당 월 10만원 정액 ·인턴 근무환경 개선비 : 2,500천원 × 25명 정도 = 62,500천원 * 채용 연계형 인턴 1명당 2,500천원 이내,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 ·행사운영비, 사업운영비 등 14,140천원
간 접 비	34,000	·기관공통경비 34,000천원

소 관 부 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시 병 연
	담 당 자	이 세 호 (480-6102)